

이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

소관부서 : 기획예산담당관

제정 1996· 3· 1 조례 제 13호
개정 2001· 11· 28 조례 제 392호
(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)
개정 2006· 11· 16 조례 제 640호
(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)
개정 2009· 5· 11 조례 제 757호
일부개정 2015· 9· 25 조례 제1152호
(제명개정)
일부개정 2018· 3· 28 조례 제1378호
(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)
일부개정 2019· 1· 1 조례 제1464호
(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일부개정 2023· 3· 6 조례 제1900호
(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른 이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9· 5· 11, 2015· 9· 25>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5· 9· 25>

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<개정 2001· 11· 28, 2006· 11· 16, 2015· 9· 25>

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자치국장, 복지환경국장, 경제문화국장, 도시주택국장, 안전건설국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이천시의회의원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이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위촉한다. <개정 2015· 9· 25, 2018· 3· 28, 2019· 1· 1, 2023· 3· 6>

④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심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구성하며, 심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되는 것으로 한다. 다만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5· 9· 25>

제3조(실무위원회)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·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 할 수 있다.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15·9·25>

1.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
2.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3.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
4.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
5.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,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
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15·9·25>

제7조(간사 등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민간투자사업 담당주사가 된다. <개정 2015·9·25>

제8조(의견청취 등)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,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9조(회의록)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0조(수당 및 여비)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 <개정 2015·9·25>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1·11·28 조례 제392호, 이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 생략

부칙 <2006·11·16 조례 제640호, 이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<2009·5·11 조례 제757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5·9·25 조례 제1152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8·3·28 조례 제1378호,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「이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」 제2조제3항 중 “안전행정국장, 복지문화국장, 산업환경국장, 지역개발국장”을 “자치행정국장, 복지문화국장, 산업환경국장, 안전건설국장, 도시주택국장”으로 한다.

② 부터 ㉑ 까지 생략

부칙 <2019·1·1 조례 제1464호,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「이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」 제2조제3항 중 “자치행정국장, 복지문화국장, 산업환경국장, 안전건설국장, 도시주택국장”을 “자치행

정국장, 종합민원국장, 복지문화국장, 기업환경국장, 안전도시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② 부터 ④ 까지 생략

부칙 <2023·3·6 조례 제1900호,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생략

② 「이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」 제2조제3항 중 “자치행정국장, 종합민원국장, 복지문화국장, 기업환경국장, 안전도시건설국장”을 “행정자치국장, 복지환경국장, 경제문화국장, 도시주택국장, 안전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③ 부터 ④ 까지 생략